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3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위성곤·박홍배·황정아

허 영・박해철・이기헌

박수현 · 오기형 · 박용갑

윤건영 • 이용선 • 박지혜

박희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를 "(국무위원 등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위원은 출석하여"를 "정부위원은 성실하게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무위원은의장"을 "국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간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⑥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무위원 등의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때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① 구) ①·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 ----- 정부위원은 성실 <u>여</u> 답변을 하여야 한다. 하게 출석하여-----______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 **(4)** ---------국무위원은 부득이한 사 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 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 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간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 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 <신 설> 부위원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출 석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